2025년도 한-EU 협력진흥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한-EU 협력진흥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o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대한 국내 연구진 참여 준비 활동을 지원하여 한-EU 협력연구 활성화 도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HE)

- Horizon 2020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EU R&I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회 과제(SDGs 등) 해결을 위한 수준 높은 지식 및 솔루션 개발 목적 추구
- 총 7년간(2021~2027) 사업예산 955억 유로(약 140조원) 지원
 - ※ 한국은 '24.3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25년부터 국내 연구자가 HE 연구과제 Pillar II(산업 경쟁력)에 선정 시 EC로부터 직접 연구비 수혜 가능

2. 사업내용

○ **선정규모** : 15과제

○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 Pillar I의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 모두 지원 가능

o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연 25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지원내용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자 사전 참여 준비 활동 지원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에 참여를 준비 중인 자*
 - * Horizon Europe 과제 신청 관련, 유럽측과 컨소시엄(한국 포함, 3개국 이상) 구성을 준비 중인 자 혹은 제안서를 준비 중인 자 등
 - ※ EU측 신청접수 마감 이전 단계의 과제만 신청 가능
 - ※ EU 협력진흥사업 선정과제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EU측 Horizon Europe 과제에 대한 신청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예: EU측 공고 관련(기공고 혹은 예정공고 포함) 컨소시엄 구성단계, 신청서 제출단계 등 참여 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본 사업은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 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 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 요망(http://www. 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 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o 2025년도 한-EU 협력진흥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① 연구자	②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 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1] (연구자) ① IRIS 회원기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아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주관연구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내용
공고 기간	2025.2.14.(금) ~ 2025.3.17.(월) 18:00까지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2.21.(금) ~ 2025.3.17.(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2.21.(금) ~ 2025.3.18.(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3.18.(화)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 ㅇ 연구개발계획서[붙임1] 참조
- ㅇ 기타 증빙자료 [붙임2] 참조

6. 평가체계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

-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o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과제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 당 점수 부여
-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Horizon Europe 참여 가능성
• 국내외 연구진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가능성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12대 국가 전략기술과 연계한 과제일 경우, 평가 시 우대

<12대 국가 전략기술>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차세대 원자력, ⑤수소, ⑥차세대통신(5G·6G), ⑦첨단바이오. ⑧우주·항공. ⑨양자. ⑩인공지능(AI). ⑪첨단로봇·제조. ⑫첨단모빌리티

7. 향후 일정

- o 2025, 3.17. **연구자 신청 마감** (주관기관 승인 : 3.18. 마감)
- ㅇ 2025. 3월 말 선정평가 및 선정
- o 2025. 4월 중 연구개시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O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응 문의전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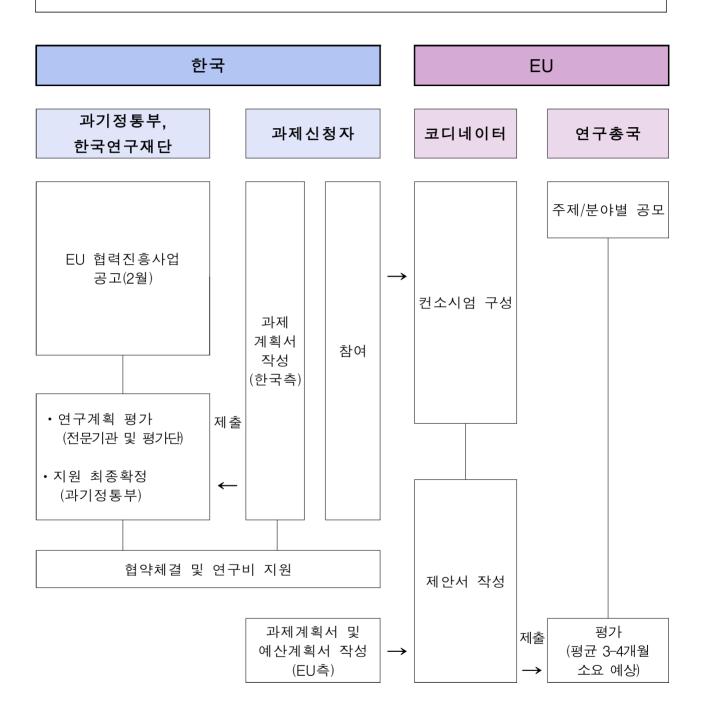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 법, 규정, 규칙:「자료실」→「국가R&D연구비 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자료실」→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 문의처

- o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TF
- 02-3460-5732 / yjsong@nrf.re.kr
- o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 2. 기타 증빙자료 양식 1부

한-EU 협력진흥사업 추진체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 호라이즌 유럽 개요

- o (개요) '21년~'2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EU의 9번째 연구혁신 (R&I)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FP9)
 - ※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Framework Programmes(FP)를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
- ㅇ (목표) "Green, Healthy, Digital and Inclusive Europe"
- o (구성)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Pillar 1),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기술 개발(Pillar 2), 창업/혁신 지원(Pillar 3) 등으로 구성

< Horizon Europe 구조 및 예산(단위: 억€)>

Pillar1. 과학적 탁		Pil	lar2. 글로벌 도전과 산업?	Pillar3. 유럽의 혁	신	참여확대 및 유럽연구지대 강호			
유럽연구			1. 보건(Health)	82.5	유럽				
위원회(ERC)	160		2. 문화·창조·차별없는 사회	22.8	혁신위원회		참여 확대		
		클 러	3. 사회를 위한 안보	16		106	및 확산	29.6	
마리퀴리	66	66	니 스	4. 디지털, 산업, 우주	153.5	유럽			
, , , , ,		터	5. 기후, 에너지, 이동성	151.2	혁신 생태계		0 권		
 연구	2.4		6. 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89.5	유럽 혁신 및	20	유럽 연구혁신 시스템	4.4	
기반시설	24		nt Research Center C,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19.7	기술연구소	30	리폼&강화		
250(262% 36조원)			535(56.0%, 7	9조원)	136(14.2%, 2	0조원)	34(3.6%, 5조원)		

총 계: 955(100%, 140조원)

□ 준회원국 가입 개요

- (준회원국 가입)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Pillar II(글로벌 문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준회원국 가입
- o (과제 참여) 준회원국은 회원국과 동등하게 주관기관으로 HE 연구과제에 지원 가능
 - ※ 제3국은 연구자가 HE 연구과제에 직접 지원할 수 없고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가 지원하는 과제에 파트너로만 참여 가능
- o (연구비 수혜) 준회원국은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HE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수혜 가능
 - ※ 제3국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되더라도 HE 연구비를 직접 받을 수 없어 필요 연구비는 별도로 자체 조달

① 표지 및 요약문

- 본 서식은 연구자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표지 및 요약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식
- 별도 작성 및 제출은 <u>필요하지 않으나</u>, 접수 과정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입력 항목에 대해 <u>사전 파악 권장</u>
- 참여연구원 중 한 명을 실무담당자로 등록하여 과제 접수를 도와줄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등록

		O.	1 7	게ㅎ	L		[] 신청	용				보임	안등급	
		Ľ	연구개발	게목	^7]] 협약·	용			일	반[]], 보안	[]
	-	중앙행정	!기관명								업명				
	전문	기관명(ह	해당 시 작성)					사입		(해당	사업명 시 작성)				
		공고병	번호						(해딩	개발 식 : 시 작성 발과제:)				
선정방식					책지정[모: 지] 정공모[]	품목공.		- 분야] ⊼	나유공.	모[]	
フィ	[] 국	가과학기	술표준분류	1순	위 소분	류 코드명	%	2순위 :	소분류	코드명	% 3 1	는위 :	소분류	코드명	%
기술분류		•	술분류 시 작성)	1순	위 소분	류 코드명	%	2순위 :	소분류	코드명	% 3 1	· - - -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	·개발명		국문					'	'				
		(해당 시	작성)		영문										
	(연구개빌	가게명		국문 영문										
	주	라연구기	개발기관	7	<u> 관명</u>	(0)					사업자등				
1221 4212					<u>주소</u>	<u> </u>					법인등		코		
연구책임자					성명	<u>;</u> 장전화					직 의 휴대건				
연구책임자				연르		<u>영선와</u> 자우편					<u>유대인</u> 국가연구		ō		
_				전체		<u> </u>	Υ'	YYY. MI	M DE					개월)	<u> </u>
					1년차		YYY. MI) – YY\			· .			
ç	연구개	발기간	단계 (해당 시 작성)	1 է	· 기	n년차 YYYY. MM. D					YY. MM		•		
				nГ	· - - -	1년차	Y'	YYY. MI	M. DE) – YY	YY. MM	. DE)(년	개월))
						n년차			M. DE) – YY\	YY. MM	. DE)(년	개월))
	연구기	H박비	정부지원		부담			등의 조			합겨	ı		 연 구 가	빈비
("ㄹ i 천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지방자치				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	합계		
_	종	· 계													
-	1단계	1년차										-			
-		n년차 1년차										+		1	
1	n단계	<u> </u>										+		1	
	공동		 발기관 등 ^{작성)}	7	관명	책임지	-	직위	휴	대전화	전자위	으편	역할	비고 · 기관-	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	1 -			
	연구	가개발기:	관 외 기관												
		연구개념	바고타네		성명	<u> </u>					직위				
		•		어린	지	장전화					대전화				
		실무딤	i 닝 사	연르		자우편				국가:	· - - - - - - - - - - - - - - - - - - -	ō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 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 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헌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 재합니다.
-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 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건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 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				총	괄연구가 (해당		식별번호 ·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Ç	연구개빌	날과저	l번호			
기 국가과학기 술 표준분류		1순위 소	`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	부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분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직		1순위 소	-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	- 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빌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	명													
전체 연구개발	기간													
총 연구개발	비	(정부지									비: 천 1연구개1		천원)	
연구개발단.	계	기초 기타(위		응용[베 해당되					기술 (해당				시점 기 시점 목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최종 목표	Ē											
		전체 내용	}											
연구개발	1	1단계												
목표 및 내용	(해당	시 작성)	내용											
	n	단계	목표											
		시 작성)	내용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 · 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 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②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 본 서식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부분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u>첨부하여 제출</u>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최종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필요
- ※ 본 페이지는 제출 시 불필요하며, 삭제 후 작성
- ※ 전체연구기간 및 개월수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IRIS 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작성

- 연구개발비 현황 : 천원 단위로 각각 기재

한-EU 협력진흥사업	연구기간	연구비
총연구개발기간(예정)	2025.04.01.~2026.03.31.	25,000천 원
(당해) 연구개발기간(예정)	2025.04.01. ~ 2026.03.31.	25,000천 원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본문1 연구개발계획서 PART2(작성서식)

< 본문 1 >

	과제명	국문	
--	-----	----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내용・방법・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4.	국제 공동연구 추진계획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제출)
7	연구개밬성과의 사업화 저랻 및 계획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 연구개발의 개요 및 중요성
- 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 · 외 현황
- **3)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최종목표	0
세부목표	

2) 최종평가 주안점(정성, 정량적 평가주안점을 합하여 연차별 5개 내외로 설정하며, 연차별 가중치 합은 100%로 작성)

구분	연차	점검/평가 주안점	가중치	관련 세부목표
최종평가	_			

3) 점검/평가 주안점의 설정근거

평가주안점	목표 설정근거

-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연구를 기술)
- 연구개발 목표는 최종/세부 및 연차별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 평가주안점에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주안점을 합하여 5개 내외로 설정
 - 향후 최종평가 시 연구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 논문, 특허 등의 성과목표치도 가능하나,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대표 평가주안점을 기술
 - 평가주안점 중 정량적 평가주안점에는 연구 및 실험의 조건/환경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평가주안점의 설정근거는 각 평가주안점 및 연차별 목표의 설정 이유를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 등에 근거하여 기술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내용 • 방법 •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내용 방법
- **2) 추진체계**(도표로 도식화)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의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 추진일정

1년차													
후 되네 O		추진일정							책임자				
추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속기관)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시험 장비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의 '1'은 연구개시 월(1개월 차, 2개월 차)을 의미함(1차년도가 9개월인 경우, 1~9까지 기입

4.	국제	공동연구	추진계호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상대국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1) 상대국 연구자 인적사항(복수로 작성가능)

국가명	연구기관명	성명	전공	직위	e-mail	비고

- (2) 상대국 연구자의 주요 이력(주요 논문, 수상실적, 주요 경력 등)
- (3) 상대국 참여연구원 현황(성명, 소속, 직위, 전공 등 표로 명시)

연번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	전공

3) 공동연구 수행자(기관) 간 연구범위 및 역할분담 내용

연구목표	한국 연구책임자 역할	상대국 연구책임자 역할

4) 상대국 매칭펀드(해당 시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님

현금	현물	

- 현금/현물 모두 원화로 명기하되, 당초 화폐단위 및 기준환율 명시
 - 상대국의 연도별 연구비 및 비목별 간략 내역 :
 - 상대국 연구자가 받는 연구비의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명 :
- 5) 국제협력 교류계획(인력교류,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6) 연구성과 배분계획(연구성과의 공유정도 및 배분계획 등 명시)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2) 상대국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상대국 연구책임자(PI) 인적사항 기술
 - 컨소시엄 파트너를 맺고자 하는 연구책임자(PI)를 (1)에 기재, 해당 연구책임자(PI) 소속 참여연구원을 (3)에 기재
 - 상대국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력·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공동연구 역할분담 내용, 국제 협력 교류계획 등을 기술
-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국가/산업의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성과 창출 등을 기술
 - 기대효과 : 연구 성과의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 과학기술 전략분야 기여도를 기술

-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제출)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 3) 기타 조치사항 이행계획

- 가.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나.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
- 다. 기타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 삭제 가능)

- 1) 국내외 시장 동향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3) 표준화 전략
- 4) 사업화 계획
- (1) 사업화 전략
- (2) 투자 계획
- (3) 생산 계획
-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가.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
- 나. 지식재신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신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
- 다.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
- 라.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

②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 본 서식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식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은 국가연구자정보에 관리되는 정보를 활용하므로 사전에 등록 필수
- 별도 작성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접수 과정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입력 항목에 대해 <u>사전 파악 권장</u>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게건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ス I スト	부서	휴대전화	
직장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치조하의 노무며(해다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신청/수행중/
			01-112		연구자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 <u>프로그</u> 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개인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71 7L	부서	휴대전화
직장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긴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색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 <u>프로그램</u>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개인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43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색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게재연도 (권, 쪽)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Lo	ы пі ж	i ¬		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참여	연도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신위	국가 연구자	약1	의 및 전	15	담당역할	구분	근무 구분	1단계		n단계		총 참여기간			
	기관		번호	최종 학위 전공 취득 학위 전공 년도 (해당 시 작성)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Lo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지원		원연도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의 기	키 및 1	신중 담당역할		구분 (해당 시	근무 구분	1단계		n단계		총 지원기간	
		기관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작성)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	,		
	서머	국문		그저	
	성명	영문		국적	
책임자	기	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국	l문			
실무	영	!문			
설구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급증사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_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Y7 U4	국문		77	
	성명	영문		국적	
책임자	기	관명		전화번호	
	부	브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	문			
AI 🗆	ë	문			
실무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100	부	보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주소		(우:)		<u> </u>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사업화	지역 ³ 』	지역 ^{3」} 사업화명	це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		출액	매출발생	기술
한구세달시천당	방식 ^{1」}	형태 ^{2」}	\\\\\\\\\\\\\\\\\\\\\\\\\\\\\\\\\\\\\\	사타자의	네ㅎ	급세공	국내	국외	연도	수명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 • 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 •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단위: 전원, 백문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CI	H표자 성명/국적			
4	(대학, 정	기관 유형 부출연연, 중소기	업 등)		
5	최대	내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yyyy년		
11	부채 ㅂ (최근 3년 간 [:]		yyyy년		
			yyyy년		
	0.5		yyyy년		
12	유동 비 (최근 3년 간 ³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 총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yyyy년		
10	기준)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1-1		yyyy년		
14	이자 보상 (최근 3년 간 [:]		yyyy년		
			yyyy년		
	0.01.5	101	yyyy년		
15	영업 0 (최근 3년 간 ⁻		yyyy년		
			yyyy년		
			성명		
	연구개발기	관의	부서		
	연구개발과제 저	1원 담당자	직위		
16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장전화		
	연구개발과제 지원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	·자"와 다름)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계획

(단위: 천원)

													11.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든 1구개발	남		그 외	기관	등의 지	원금			합 계	
I E	연구개발비	연	년구개 발	비	지병	방자치단	<u></u> 단체	フ	[타()		E 71	
단 연 연구개발기관명 계 차 (기관역할¹-)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1													
n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기	ㅐ발비							(2.1	
							직접비									연구	연구
연구개발	기과며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E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친구} 수당 계상
진ㅣクリᆯ	기단증	인건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	특례 ^{4」}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ල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환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기준 금액 ⁶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시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시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_{\perp}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 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	구개팀	날비								
						직	접비									연구	연구
연호	L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	선도 수당 계상
2^	ı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0 0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입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난우	:	선원)

							اد.	7 711 6	Litt							()	I - 연변/
								구개팀	[미								
						직	접비									연구	연구
연 <i>차</i>	t.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한 수당 계상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비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	(단위	ŀ	처원)

							0-	7 7 H	Lut							(27	1. 2.2)
								구개별	[미								
						직:	접비									연구	연구
연치	·L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한 수당 계상
2.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00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rLo	처원)
(トーナ	신 권.

																(단위	<u>: 선원)</u>
							연	구개발	날비								
						직	접비									α	α
연ㅊ	L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연구 개발비 외	연구 수당 계상
2^	·I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ල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한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	기준 김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시설 • 장비 구축 • 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 • 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 =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 • 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특히, 신규로 구축하는 3,000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 반드시 기재요망

(2)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활용계획

(단위: 천원)

		기존/신규			비용		전담인력		
연구개발기관	명 연구시설명	구분	운영기간	연간운영	과제반영	현금/현물	선담한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TE		비용	비용	구분1」	Т		
			уу-уу						
			уу-уу						

^{* 1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단위	전체 항목에서 위 차지하는 비중 ^{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근거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0	1)
Z	2)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 (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 (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한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ㅇ 특허 실적 : 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해당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대표적 특허실적 총 5건 이내 작성		
트리시되	- 실적인정기준 : 특허는 등록된 것만 인정		
	- 특허명 및 등록 번호 : 특허 등록서에 명시된 공식 명칭 기재		
특허실적	- 출원자명 : 특허 출원자로 기재된 정보를 기재		
	- 발명자명 : 특허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책임자 성명 기재		
	- 비고 : 특허 관련 비고자료(예시 : 삼극특허 등) 기재		
	ㅇ 논문 실적 : 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해당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대표적 논문실적 총 5건 이내 작성		
	- 실적인정기준 :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만 인정		
	- 저널명은 반드시 정식명칭(full name)을 기재하도록 함(약어 사용 금지)		
노묘시점	- ISSN 번호는 'http://apps.webofknowledge.com'에서 논문 타이틀을 검색하거나 해당 저널 홈페이지에서 확		
논문실적	인 가능(ISSN 예시 : ○○○○-○○○○)		
	- ISSN이 없는 경우 ISBN을 기재하고, paper version을 우선적으로 기재		
	- 역할(제1,교신,공동): 논문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의 역할(제1, 교신, 공동 중 택1)을 기재		
	- 논문에 역할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메일 주소가 들어간 저자를 주저자(교신 또는 제1)로 기재		
	o 기타실적 : 주관연구책임자의 기술이전실적, 수상, 저서, 강연 등의 기타성과 총 5건 이내 작성		
기타실적	- 최근 5년간(해당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논문/특허 이외의 연구실적(국제학회 초청강연,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	참여, 기술이전, 저서 등) 에 대하여 관련 내용 기술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 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정성, 정량적 평가항목을 합하여 5개 내외로 설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 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 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서식] 기타 증빙자료

[증빙자료 목록]

구분	목록	제출여부 (Y/N)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기타 증빙서류 작성 후, 증빙목록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여부(Y/N) 작성 필수
- 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가능(IRIS 접수시스템의 주관기관 전자승인으로 갈음)

점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2025년 한-EU 협력진흥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 사항		인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차별성〉		
○ 본 사업에 신규 지원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있습니까? (타 부처 포함)		
〈연구책임자 자격〉		
○ Horizon Europe 과제 신청 관련, 유럽측과 컨소시엄(한국 포함, 3개국 이상) 구성을 준비 중인 자 혹은 제안서를 준비 중인 연구자인가?		
○ 본 신청과제는 EU측(Horizon Europe) 신청접수 마감 이전 단계의 과제인가?		

(조기, 고드, 이타, 어그게바다]과이 되어야 권이 레마 보이템 미 보시 이렇 신보	호	l인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예	아니요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 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 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①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기관명) (직인)

천부2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업명	2025년 한-EU 협력진흥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 · 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6항, 제19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 2. 「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 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구분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직인)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000000 - 0000000)개인사업자) 연구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학생연구원